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4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4. 12. 장덕준 의원 외 6인
- 나. 회부일자: 2021. 4. 12.
- 다. 상정일자
 - 제24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1. 4. 19.)
 -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장덕준 의원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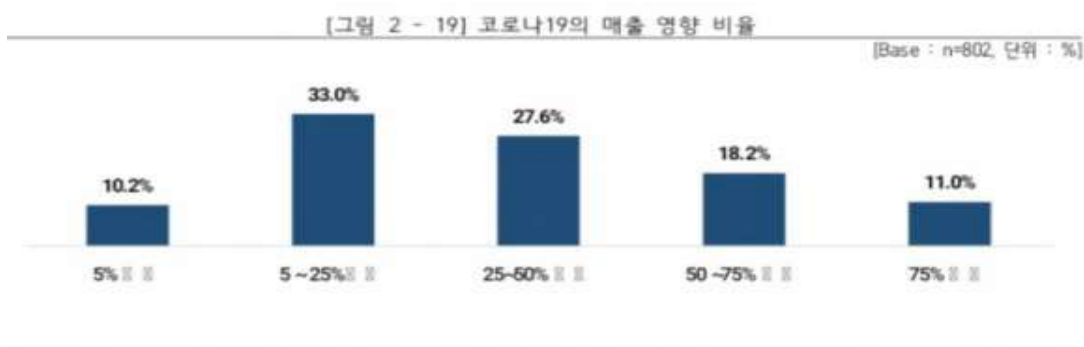
- 가. 제안이유
 -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(폐업 준비 중인 자 포함)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 신설(안제8조의2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안은 코로나 19 감염병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자영업,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

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제외되었던 폐업하려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임.

-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쓸며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, 감염병 특성상 대면접촉이 많은 영세 자영업,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,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²⁾를 살펴보면,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이 80.2%로 나타나고 있으며, 또 매출 감소 비율은 5% 이상 ~ 25% 미만이 가장 많았고, 20% 이상 ~ 50% 미만도 27.6%에 달하고 있음. 실태조사는 또 폐업 소요비용이 1,000만 원 미만이 55.3%여서 폐업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임.



- 이러한 환경에서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, 그리고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재난극복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는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) 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 10월 13일 ~ 11월 3일 여론조사기관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 소상공인 700명, 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

- 그러나, 앞으로도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재난 지원금을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떠안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며, 취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 재원 활용방안과 장기적인 재난 대비 별도 기금의 조성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검토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소상공인기본법

-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2조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재창업 지원
 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
 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-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-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
 처음으로